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

책임작성 | 최세경 연구위원(02-707-9833, skchoi@kosi.re.kr)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논의배경
2.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
3. 주요국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비교
4. 2022년 세제개편안의 세부내용
5. 시사점 및 제언

| 요약

-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
-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호소
 - 1997년부터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매우 저조
-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관련 세제혜택 제도를 개선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
- 이에 본 연구는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과 쟁점을 검토하고 2022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시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사회 저변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여기는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장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 중소기업은 '사전(생전) 가업승계' 방식을 희망하고 기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더 선호하나, 세금 감면 혜택은 기업상속공제가 더 커 수요와 정책 간 미스매치가 발생
- 중소기업은 사전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제도개선 관련에서는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와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해외 주요국의 기업상속공제제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에 비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으로 적용

- 독일, 영국, 프랑스는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한국보다 낮고 '기업경영 영위 기간'의 요건도 짧으며, 사전요건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
- 사후관리요건으로 '고용유지 요건'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뿐이며, 일본,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사후관리요건이 아예 없거나 가업승계 후 '기업경영 유지' 또는 '지분 유지' 기간만 3~5년 수준으로 짧게 적용

■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에 지적된 실효성 부족의 한계를 해소 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기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가업승계로 인한 상속세 공제혜택의 규모를 키우고,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업상속공제와 동등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사후관리요건 등을 정비
 -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의 방식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더 선호하는 만큼, 이번 공제한도 상향 등 동등한 요건의 부여로 향후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의 실질적 완화 효과가 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

-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세제특례로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2022년 세제개편안 이후에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려면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별도의 지원책 보완이 필요

-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나 여전히 남아있는 상속자/수증자의 경영권 유지, 업종변경의 제한, 자산처분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의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 검토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상속증여세 공제와 같은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경영 컨설팅, 가업승계 관련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

1. 논의배경

■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

- 2019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에서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이며, 제조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령별 구성비에서도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8년 23.2%에서 2020년 30.7%로 빠르게 증가

〈표 1〉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비중(2015~2019)

(단위: 개,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1,716,465 (29.1)	1,796,518 (29.5)	1,888,783 (30.0)	1,995,827 (30.1)	2,064,180 (30.0)
전체(중소기업)	5,889,611 (100.0)	6,080,914 (100.0)	6,296,210 (100.0)	6,638,694 (100.0)	6,888,435 (10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KOSIS.

〈표 2〉 제조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령별 구성비(2018~2020)

(단위: %, 세)

연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균 연령
2020	0.3	4.2	20.9	44.0	26.4	4.3	54.9
2019	0.7	5.4	23.9	43.9	22.4	3.8	53.9
2018	0.1	4.2	23.3	49.1	18.6	4.6	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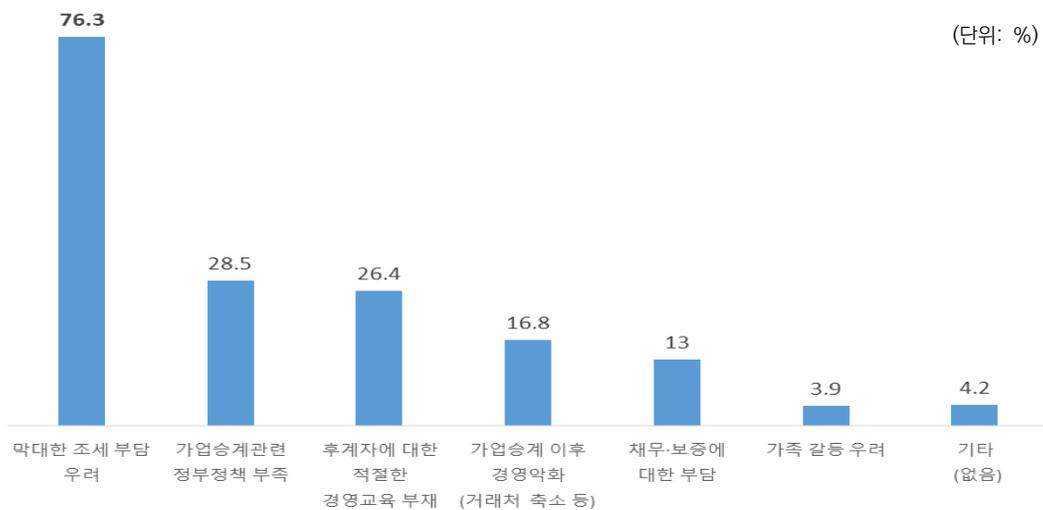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각 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고서.

- 이러한 60세 이상의 창업 1세대가 다음 세대로 가업을 적시에 승계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이 제한되거나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 손실이 발생
 - 투자 위축, 혁신 활동의 지연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폐업에 이르면 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소멸

■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호소

-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1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7%가 ‘가업승계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60.7%가 ‘가업승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업승계 시 또는 추진 시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76.3%로 가장 높게 조사

[그림 1]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2),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1997년부터 기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그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

-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 상속의 지분, 자산 등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연부연납 허용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
-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2020년의 연평균 기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89건, 공제금액은 2,279억 원이며, 연평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이용건수 163건, 공제금액 2,401억 원에 불과
- 즉, 정부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현행 세제혜택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지 못함을 시사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관련 세제혜택 제도를 개선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 지난 2022년 3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
 -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
 - 그 결과로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안한 개편안 대부분을 반영하여 가업 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대상, 한도, 조건 등을 개선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세제발전심의위원회, ’22.07.21)

- 따라서 본 연구는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과 쟁점을 검토하고 2022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정책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
 -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현행 세제특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와 쟁점을 논의하고 해외 유사 세제특례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
 - 마지막으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미치는 시사점과 향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도출

2.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

가. 국내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

- 국내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특례, 최대주주할증평가 면제 등으로 구성
 -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영위, 지분율 50% 이상,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로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하여 가업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일정한도의 기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적용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에 대해, 최대 10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단, 개인기업은 제외)
 - 연부연납특례는 기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 납부기간을 5년(일반 상속증여분)에서 10년~20년까지 연장을 허용
 - 최대주주할증평가 면제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평가액에 할증평가(20~30% 가산)하는 대상에서 중소기업의 주식을 제외하는 것

-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적용대상에 대한 사전적 요건과 가업 유지에 관한 사후적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유했다
 - 사전적 요건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소유권(지분율)과 경영권(대표자)을 2년 또는 5년 이내에 모두 승계 받아야 하는 구조
 - 사후적 요건으로 승계 또는 증여 후 7년 이상 업종변경이나 휴·폐업 없이 대표자로서 가업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고용유지 의무 등까지 준수해야 함
 - 나아가 사후적 요건을 위반할 시, 기존에 공제를 받은 과세가액을 상속세와 증여세에 산입하여 과세를 부과하고 그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될 수 있음

- 이러한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엄격한 요건이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

〈표 3〉 국내 현행 기업승계 세제혜택제도

구분	기업상속공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법적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적용대상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좌동	
사전요건	피상속인/증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피상속인 최대주주로 지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 기업영위기간동안 법정기간(50% 또는 10년 중 5년, 10년 이상 기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시 조부모 포함) 최대주주로 50%(상장법인은 30%)이상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 	
	상속인/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상속인/증여세과표 신고기한까지 기업종사/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증여세과표 신고기한까지 기업종사/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공제액(특례) 및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억까지 10%, 30억~100억원까지 20% 증여세 저율과세 선대경영자 사망시 상속세 정산 	
공제(특례) 대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대상 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사업관련 자산 비율 해당 분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제외 	
사후관리	관리기간	7년	좌동
	기업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기업에 종사/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종사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 금지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금지 	좌동
	자산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기업용 자산의 20%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 처분 금지	별도 요건 없음
	지분유지	상속받은 지분을 7년간 유지	증여받은 지분을 7년간 유지
	고용유지	7년간 각 사업 연도 고용유지 요건 (고용인원 또는 급여 80%) 및 누적평균 고용유지 요건 충족 의무	별도 요건 없음
사후관리 위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하여 상속세 부과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별 추징율 차이 : 5년 미만 100%, 5-7년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주식 가액에 증여세 부과 (10~50%) 이자상당액 가산 	
연부연납특례	신청요건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특례 해당사항 없음
	적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또는 7년 분할 납부(3년 거치 허용) 기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20년 또는 15년 분할 납부(5년 거치 허용) 	연부연납 특례 해당사업 없음 5년간 분할 납부(거치기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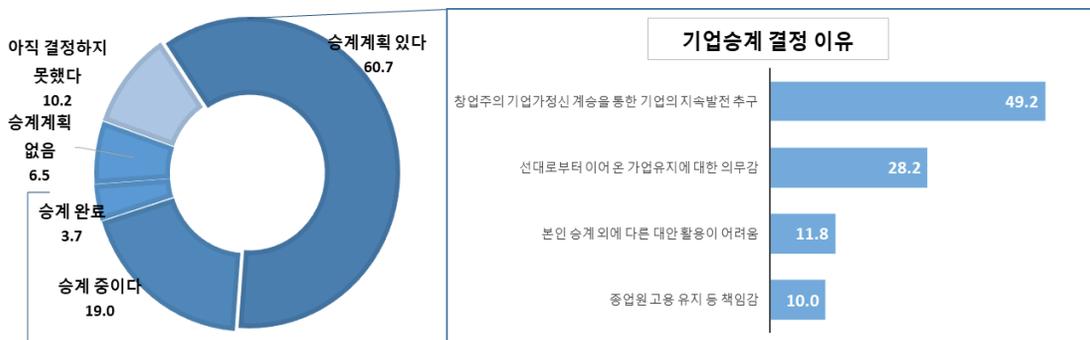
나. 가업승계 애로사항과 정책수요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제약하는 1차적 원인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 저변의 부정적 인식

- 업력 10년 이상의 다수 중소기업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를 목적으로 가업승계의 계획을 보유
- 반면에 일반국민은 가업승계를 ‘불법·편법적 상속’, ‘노력없는 부의 대물림’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

[그림 2] 가업승계의 계획 및 목적

(단위: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2),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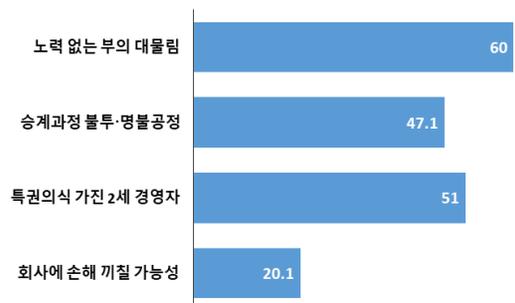
[그림 3] ‘가업승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단위: %)



[그림 4] 가업승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

(단위: %/복수응답)



자료 : 매일경제저두잇서베이(2019.02.06), 가업승계 인식조사.

- 이와 같은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여기는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장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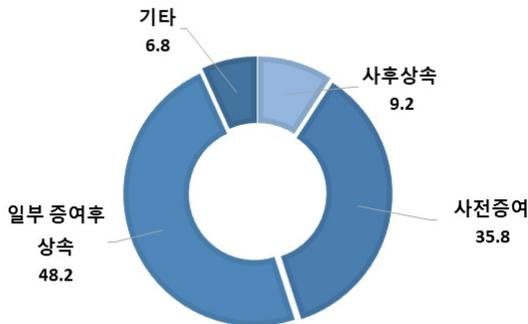
- 2019년 기준 내국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하에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제도를 유지 (김희선, 2020)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엄격한 사후관리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¹⁾이 꾸준히 제시되었으나 조세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중소기업은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 ‘일부 증여 후 상속’을 가장 선호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개선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

- 중소기업이 추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주된 가업승계 방식은 ‘일부 증여 후 상속’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전증여(생전)’가 35.8%
-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선호도를 보면, ‘증여세 특례제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4.4%로 ‘기업상속공제(41.7%)’보다 더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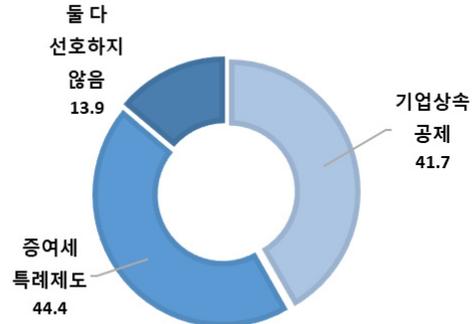
[그림 5] 주된 가업승계 방식

(단위: %)



[그림 6]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 선호도

(단위: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2),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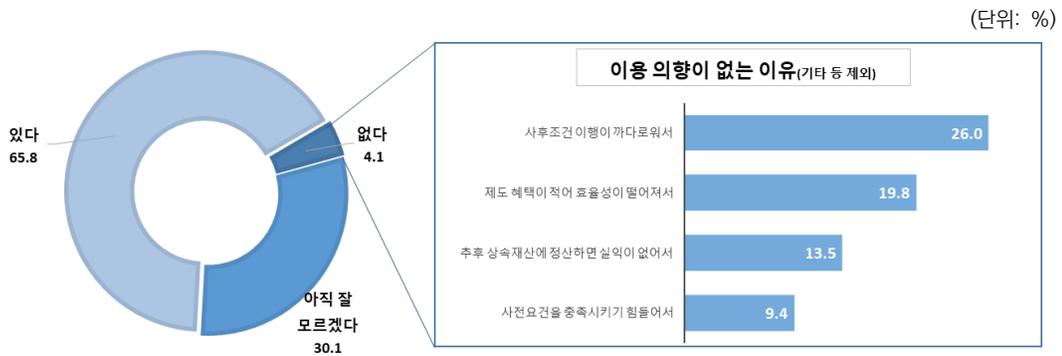
- 이처럼 중소기업은 사전(생전)에 이루어지는 가업승계 방식을 더 선호하나,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는 100억원으로 기업상속공제와 비교할 때 최대 5배까지 낮고 적용대상도 개인기업이 제외되며 연부연납 특례도 제한되는 등 수요와 정책 간 미스매치 발생

1) 남유선 (2019), 서보국 (2019), 윤태화·박종성·이영한(2020), 이영한·최기호·김혜성·이혜영(2022) 등 참고

■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활용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사전요건 충족'을 지적했으나, 제도개선 수요에서는 '사후관리요건 완화'를 더 희망

-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1%였으며, 그 이유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가 26%로 가장 높게 조사
 - '제도의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라는 응답은 19.8%로 나타나, 세금 부담 완화의 효과가 있지만 그 요건 충족이 어려워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유추 가능
- 가업상속공제 관련 제도개선의 수요를 보면,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건은 '가업용자산 유지 요건'과 '업종유지 요건' 등

[그림 7] 가업상속공제의 이용 의향 여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2),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표 4> 가업상속공제의 제도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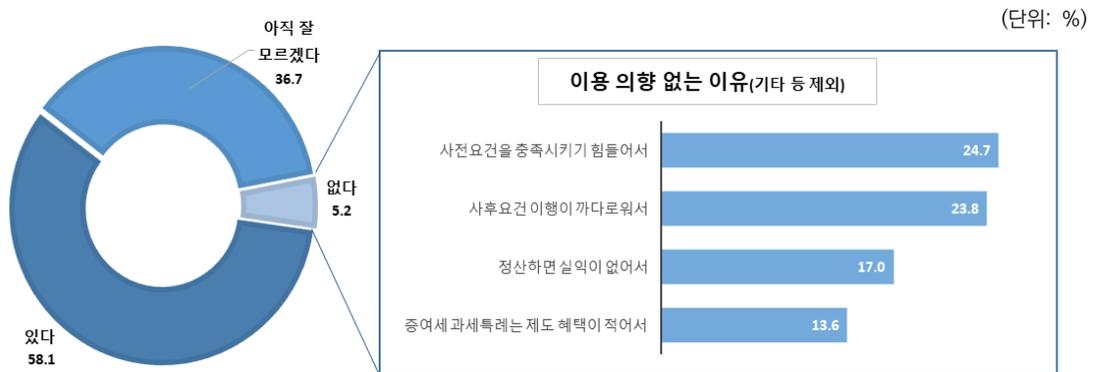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완화/요건폐지	현행유지	강화/확대/확장
사전 요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49.5	49.0	0.0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	48.1	48.8	3.0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기간	48.5	49.6	2.0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직접 가업 종사기간	20.3	71.1	8.6
사후 관리 요건	고용유지 요건	62.6	36.5	0.9
	사후관리기간	61.0	36.5	2.5
	가업용자산 유지 요건	72.0	27.3	0.7
	가업의 주된 업종 유지	66.7	32.1	1.2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2),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사전요건 충족’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컸으며, 제도개선 관련에서는 ‘공제한도 확대’와 ‘증여자 확대’의 수요가 높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8.1%로 가업상속공제 이용 의향보다 낮았으며, 이용 의향이 없는 주 이유는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로 나타남

[그림 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 의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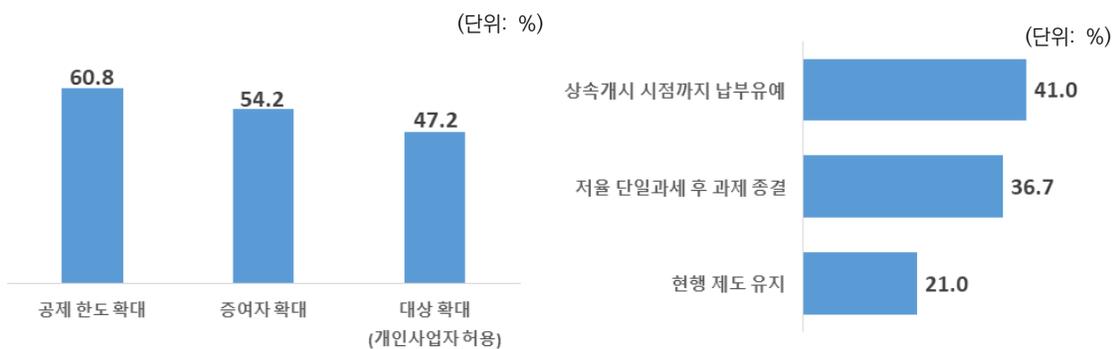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2),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개선 수요의 경우 ‘공제 한도 확대’가 60.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증여자 확대(54.2)’, ‘대상 확대(47.2%)’ 순
- 증여세 납부방법의 개선 수요로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라는 응답이 41%로 ‘저율 단일과세 후 과세 종결(36.7%)’보다 높게 조사

[그림 9]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필요성

[그림 10] 납부방법 개선 방향(기타 등 제외)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2),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3. 주요국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비교

■ (적용대상) 한국과 일본은 적용대상에 기업규모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유럽 국가 등 주요국은 적용대상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한국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4천억 이하 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자에 한정하여 적용
 - 일본은 2009년부터 ‘법인용 사업승계세제’를 도입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개인사업자 자산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유예(김희선, 2020)
- 독일의 경우, 자산규모 2,600만 유로(약 350억원) 초과 기업은 필요성 심사를 거친 뒤 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하나 실질적으로 기업규모의 제한은 없음
-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 제한이 없으며, 미국은 2013년 이후 가업상속 관련 세제혜택을 아예 폐지

■ (공제율 및 공제한도) 가업상속 공제율은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한국은 공제 한도가 낮고 공제대상 자산도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 한국은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세율이 10~50%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에도, 주식, 사업용 자산 등에 한정하여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과세가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까지만 공제 가능
- 주요국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해주는 일본을 제외하고, 비율공제 방식을 통해 공제한도 없이 주식,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
 - 일본은 법인의 비상장 주식 또는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을 공제대상에 적용하며 공제한도 없이 상속세의 100%를 2027년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있음
 - 독일은 비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상속세의 85%, 10% 이하인 경우 상속세의 100%를 ‘9천만 유로’의 한도까지 공제
 - 영국은 ‘사업자산공제제도(Business Property Relief)’를 통해 사업용 자산의 유형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한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
 - 프랑스는 특정 기업상속에 대해 저율(5%)로 과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의 75%를 공제한도 없이 공제

- (사전요건) 한국은 가업영위 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의 사전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에 주요국은 사전요건에 해당하는 제한이 거의 없음
 - 한국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지분의 50% 보유하고 기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과 함께 대표자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기업상속 전 2년 이상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 후 2년 내 대표자 취임이 필요
 - 일본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에 대한 사전요건은 없으나,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대표자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기업상속 전 3년 이상 종사하고 기업상속 후 5개월 내 대표자 취임이 요구됨
 - 독일은 피상속인의 사전요건으로 지분의 25% 이상 보유만 존재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영위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분 보유에 대해서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요건이 존재
 - 영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지분의 34% 이상, 상속인은 상속받은 지분을 4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프랑스는 피상속인만 2년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함
 - 한국과 일본만 가업승계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전요건으로 소유권(지분)과 경영권(대표자 재직)을 동시에 적용하는 특징을 보여줌

- (사후관리 요건) 한국과 독일은 가업승계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다른 국가는 사후관리 요건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으로 적용
 - 한국은 가업승계 후 7년간 기업경영을 유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기업용 자산의 20% 처분 금지, 지분 50% 유지 등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7년간 고용 유지에 관한 요건이 적용
 - 가업승계 이전의 10년 평균 고용인수 또는 총급여와 비교하여 매년 80% 이하일 경우, 또는 사후관리 7년간 총 고용인수와 총급여가 100% 이하일 경우, 공제로 감면된 상속세에 대해 추징이 발생
 - 독일은 기본적으로 5년간 기업경영과 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85%를 공제받은 경우 총급여의 누적 400% 이상과 고용인수 평균 80% 이상을, 그리고 100%를 공제받은 경우 7년간 비사업용 자산 비중을 10% 이하 유지와 함께 총급여의 누적 700% 이상과 고용인수 평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일본은 가업승계 후 5년간 기업경영과 그 지분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후 관리 요건이 없으며, 프랑스 역시 가업승계 후 3년간 기업경영을 유지하고 4년간 지분을 유지하는 것만 적용
- 마지막으로 영국과 벨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부재

■ 결국,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제약하거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주요 원인

-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승계를 활성화하여 고용 창출 및 유지와 경제성장을 제고 하려는 취지임에도, 부의 대물림 방지, 가업승계의 고용 기여도 등을 고려한 여러 요건 때문에 오히려 가업승계가 제약되는 역설성이 작용
-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로 감면된 상속세를 추징 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을 위축시키는 요인
 - 기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2016~2020년간 추징당한 금액이 428억원이며 그 중 절반가량이 ‘고용유지 요건 위반’(이영한 외, 2022)
- 앞에서 살펴본 가업승계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개선수요를 고려할 때, 해외에 비해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함을 시사

〈표 5〉 주요국 기업상속공제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사 전 요 건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중견기업(매출 4천억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자 (개인, 법인)	제한 없음 (단, 자산 2,600만 유로 초과 기업은 심사)	제한 없음	제조업, 상업, 농업, 자유업종(?)에 한함
	기업유지기간	10년	없음	없음	2년	2년
	지분	50%(상장법인 30%)	50%	25%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 (지분율요건X)	2년 이상 보유 34% (상장회사 20%)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지기간 50% 이상 재직 ■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대표	없음	없음	없음
	지분	-	50%	없음	없음	4년
	경영	기업상속 전 2년 이상 총사/ 상속세 신고 후 2년 내 대표 취임/ 5년간 유지	기업상속 전 3년 이상 총사/ 5개월 내 대표 취임/ 5년간 유지	없음	없음	없음(주주로서 경영참여)
공 제 내 용	직계존속세율	10~50%	10~55%	7~30%	40%(증여세 20%)	5~45%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30억원	약 63억원	약 350억원	없음	약 24억원
	공제방식 및 공제율	가액공제	납부유예(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월공제 ■ 85%/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월공제 ■ 5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월공제 ■ 75%
	공제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 사업용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비상장 주식 ■ (개인사업자)모든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 사업용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 기업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 사업용 자산
	공제한도	200억 원 ~ 500억 원	한도없음	9천만 유로	한도없음	한도없음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사후 관리 요건	자산유지 요건 (5년 내 10%) 처분 금지	없음	100% 공제는 비사업용 자산 비중이 10% 이하로 7년간 유지	없음	없음
	경영지속요건 7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 공제 대상: 5년 100% 공제 대상: 7년 	없음	3년
	지분유지요건 50%(상장기업은 30%)	5년간 상속받은 지분 유지	5년(25%)	없음	4년
	고용유지요건 7년간 매년 80% 및 누적 평균 100%(급여, 고용인수)	사실상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 공제 요건: 5년간 총급여 80% 이상, 100% 공제 요건: 7년간 총급여 100% 이상 고용인수 80% 이상 	없음	없음
주식 평가 요건	대상 최대주주(중소기업 제외)	지배주주	소액주주	소액주주	-
	할증/할인 20%	없음	10% 할인평가	할인가능	-

자료 : 국제통계연보; EY(2021),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OECD(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4. 2022년 세제개편안의 세부내용

■ 가업승계 관련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간의 정합성 확보

-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취지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피상속인 요건 완화,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언급
-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가업상속공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그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업종변경 제한의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도 반영됨
- 나아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까지 지속적인 가업승계를 촉진하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특례제도가 새로 도입
- 기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의 대상 축소 등도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 여기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 내용과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가업승계로 인한 상속세 공제혜택의 규모를 키우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둠

- (적용대상 확대) 매출 4천억원까지 중견기업에서 매출 1조원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가업승계로 인한 기업성장까지 고려
-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적용되던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상향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까지,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공제한도 상향
- (피상속인 사전요건 완화) 그간에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

- 최대주주로서 지분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10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에서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경우 20%) 이상으로 완화
-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승계 후 기업이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
 - 가업승계 후 업종변경의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에 ‘대분류 내’로 확대
 -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을 매년 80% 이상, 7년 평균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을 5년 평균 90% 이상으로 일원화
 - 가업승계 후 기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의 요건을 기업용 자산의 60% 이상 유지로 완화

〈표 6〉 가업상속공제 관련 2022년도 세제개편안의 세부내용

구분	현행	개편안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 4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 1조원 이하)		
사전요건	가업영위 기간 10년 이상	(좌동)		
사 후 관 리	기간	7년	5년	
	요 건 유 지	업종	중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고용	근로자수 or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7년 평균 100% 이상	근로자수 or 총급여액: 5년 평균 90% 이상
		자산	기업용 자산의 80% 이상	기업용 자산의 60% 이상
		지분	상속받은 주식 등	(좌동)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원 ■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20년 미만 : 400억원 ■ 20년 이상~30년 미만 : 600억원 ■ 30년 이상 : 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자료 : 기획재정부(2022.7.21), 2022년 세제개편안.

- 피상속인 사전요건의 완화는 가업승계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확대시키고, 공제한도의 상향과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유인하는 효과가 예상됨
 - 가업승계의 경제적 혜택이 되는 공제한도를 상향하면서 가업승계 후 자산, 고용 등의 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경영의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에 해당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동등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의 상향, 사후관리 요건 등을 정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
 -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규모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적용
- 기본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10%와 20%의 저율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30억원 기준에서 60억원 기준으로 상향
- 수증자의 대표자 취임과 유지 요건을 기존 5년내 취임과 7년간 유지에서 3년내 취임과 5년간 유지로 완화
-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가업승계 후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 내로 확대하고, 증여자 지분 요건도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로 완화

〈표 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2022년도 세제개편안의 세부내용

구분	현행	개편안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 4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 1조원 이하)	
사 후 관 리	기간	7년	5년
	요건	가업 5년내 대표이사 취임 & 7년간 유지	3년내 대표이사 취임 & 5년간 유지
	유지	업종 중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지분	증여받은 주식	(좌동)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30억 이하: 10%/30억 초과: 20%)	최대 1,000억원(가업영위기간별 차등*)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60억 이하: 10%/60억 초과: 20%) * 10년 이상(400억), 20년 이상(600억), 30년 이상(1,000억)	
증여자 지분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 (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40% 이상 (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자료 : 기획재정부(2022.7.21), 2022년 세제개편안.

-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의 방식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더 선호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한 이번 2022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의 실질적 완화 효과가 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

- 먼저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의 기간에 차이를 두던 방식에서 그 기간을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납부가 가능한 형태로 단일화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만 적용대상이며, 상속과 증여에 따라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후 세대에 재차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납부유예가 가능
 -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에, 그리고 수증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신에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유예
 - 사후관리 기간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마찬가지로 5년이며, 고용·지분 유지의 요건은 그에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

〈표 8〉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세부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중소기업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 세대로 재차 상속증여 시 납부유예 지속)		
한도	(없음)		
사 후 관 리	기간	5년	
	요 건 유 지	업종	(없음)
		가업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할 것
		고용	근로자수 or 총급여액 : 5년 평균 70% 이상
		지분	증여받은 지분

자료 : 기획재정부(2022.7.21), 2022년 세제개편안.

-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세제특레이며 사후관리 요건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보다 완화되어 있어 향후 중소기업의 주된 가업승계 방식이 될 전망
 -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 유지의 요건도 더 낮을 뿐만 아니라 자산·업종 유지에 대한 요건이 없어 가업승계에 따른 부담이 훨씬 덜 하기 때문임

5. 시사점 및 제언

■ 지금까지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 부족, 그리고 수요와 정책 간 미스매치가 존재함을 확인

-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유지와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세제 혜택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으로 오히려 가업 승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에는 사전(생전) 가업승계 방식과 그에 도움이 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더 선호하나,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공제한도가 낮고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금 혜택이 더 불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고용유지 요건이 없어 그 활용 실적이 더 높지만 건당 공제(특례)액과 공제(특례) 총액은 더 낮은 상황

〈표 9〉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건 수	공제 총액	건당 평균 공제액	건 수	과세특례 총액	건당 평균 특례액
2014	68	98,608	1,450	106	139,329	1,314
2015	67	170,593	2,546	76	107,798	1,418
2016	76	318,378	4,189	130	202,257	1,556
2017	91	222,598	2,446	173	263,596	1,524
2018	103	234,421	2,276	204	311,920	1,529
2019	88	236,343	2,686	172	238,280	1,385
2020	106	421,049	3,972	222	316,951	1,428

자료 : 국세통계연보

■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한계로 지적된 실효성 부족을 해소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개선 수요가 높았던 사후관리 요건의 대부분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승계 후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의미가 있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경제적 혜택에 해당하는 특례(공제)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저율 세율 기준도 상향시킴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
- 새로 도입된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만 적용대상이며 사후관리 요건이 덜 엄격하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
 -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유지해야 할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업종의 변경이 자유롭고 고용유지의 부담도 더 완화되어 있음
 - 재차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증여세 납부유예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려면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별도의 지원책 보완이 필요

-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나 여전히 남아있는 상속자/수증자의 경영권 유지, 업종변경의 제한, 자산처분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의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 상속자/수증자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요건은 전문경영인과 가족경영을 병행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폐지하는 것이 적절
 - 산업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를 위한 자산처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
-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 공제와 같은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
 - 가업승계에 통상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승계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무경영 컨설팅을 지원

- 가업승계 시 일시적으로 경영자금 부족에 직면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위해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상속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 가업승계 후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과 유지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후 100%를 초과하는 신규 고용에 대해 장려금, 세제혜택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음

참고자료

[국내 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김희선(2020),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중소기업 포커스 20-21), 중소기업연구원.

남유선(2019), 「기업승계를 위한 M&A 활성화 방안」, 『증권법연구』, 제10권 제3호, pp. 193-238.

매일경제·두잇서베이(2019.02.06.), 「가업승계 인식조사」.

서보국(2019),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 가업상속공제와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pp. 83-120.

세제발전심의위원회(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윤태화·박종성·이영한(2020), 「중소기업 기업승계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영학회.

이영한·최기호·김혜성·이혜영(2022),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경제, 사회적 실증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2022),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각년도.

[외국 문헌]

EY(2021),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OECD(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기사 인용]

서찬동 외, 「가업승계에도 반기업 정소... '명문기업·백년가업' 인식 10%뿐」, 『매일경제』, (2019.02.06.).

KOS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오동윤

편집인 : 최세경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i.re.kr>

인쇄처 :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